

1. 보험업감독규정 제7-44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

(제1호)

1. 조치기관	금융감독원
2. 조치일자	2018. 7. 9.
3. 조치기간	해당없음
4. 조치이유	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위반(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및 전담조직 미운영)
5. 조치내용	과태료(2천만원)부과/임원 주의
6. 향후계획	위반사항 보완
7. 기타	

< 기재상의 주의 >

주) 보험업감독규정 제7-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내용을 기재